

지보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5. 3. 12. ~ 3. 15.(4일간)

 감사범위 : 2013. 3. ~ 2015.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44건(주의 5, 시정 11, 현지시정 28)
 - 본 처분 16건(주의 5, 시정 11)

○ 재정상 조치

- 5건 2,549,670원
(추징 1건 240,000원, 회수 4건 2,309,670원)

주요지적사항

1. 보안 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제2항에 의하면 당직자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3월부터 2015.3월 감사일 현재까지 208회에 걸쳐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보안점검 소홀
- ▶ 최종퇴청시 청사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여 보안검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제3자 발급 부적정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14조(비밀유지)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재무과-1237(2015.1.22.)호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요령 통보에 의하면 지방세의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법(제680조~692조)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자가 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2013.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〇〇〇 외 5명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3자에게 발급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발급
- ▶ 제3자 발급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인감증명 대리발급 부적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담당자는 위임의사를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위임장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3.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13년 66건, 2014년 91건, 2015년 10건에 대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인감증명 위임장에 접수인 등을 미날인

- ▶ 위임장에 누락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임지급 부적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2014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1일 3시간 주3일 근무, 월급여액 200천원(12일 만근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14년 11월 노인일자리사업 포기자에 대하여 노임 116,670원 지급

- ▶ 과다 지급된 노임 116,670원을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소홀

-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 하고 있고,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청소기한이 도래하면 1개월 전에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청소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201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494건에 대해 청소 안내 엽서 발송을 하지 않았으며 미청소자에 대한 독촉도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 소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년도 미실시자를 조사하여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 관리 소홀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수수료의 감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전출입 사실이 없는 전입자에 대하여 가구당 200리터의 일반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3년 4월, 6월에 전입한 전세대 외 8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소홀
- ▶ 전입세대에 미지급한 쓰레기봉투는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폐업지원제(FTA 한우폐업) 사후관리 부적정

-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품목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폐업지원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업장은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및 매년 2회 이상 쇠고기 이력제 조회 후, 그 확인 결과를 같은 지침 제9호 서식에 의한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폐업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폐업현장 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고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3년 34건, 2014년 4건의 한우폐업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 기재누락된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보완 작성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농가형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물 등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의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 규정』 제69조 및 각 사업에서 따로 정한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연도별 점검 내역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2014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인 저온저장고를 관리함에 있어 대장 작성 및 비치를 누락하는 등 관리 소홀
- ▶ 2014년도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24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공사비 과다 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 2014. 11. 25. ~ 2014. 12. 30.까지 ■■■■(주) ○○○와 계약하여 시공한 □□2리 웅벽설치공사의 설계내역에 문양거푸집 비용을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에 따른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77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
 - 2014. 3. 17. ~ 2014. 5. 5까지 ◆◆◆◆(주) ○○○과 계약하여 시공한 □□1리 농로포장공사는 현지 여건상 포장 거푸집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준공처리하기 이전 현장상태를 기초로 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463,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
 - 2014. 4. 15. ~ 2014. 5. 12.까지 (주)●● ○○○과 계약하여 시공한 □□2리 암거설치공사는 레미콘 타설(현장타설)로 내역서상 계상되어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벽체 및 상부는 레미콘펌프카 타설로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96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자율방법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원 부적정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법대 관리규칙(예규 제97호)에 의거 2013년 자율방법대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재를 득하고 활동실적을 제출받아 활동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금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4년 자율방법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활동실적이 미제출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비 지급

- ▶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2. 정부수입인지 및 예천군수입증지 미소화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세문서 및 세액)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소인을 붙여 인지세를 납부(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2만원)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서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천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서에 1만원의 예천군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리 농로포장 공사 외 7건에 대한 계약 후 지출함에 있어 정부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천군수입증지 미첨부
- ▶ 미소화한 정부수입인지 160,000원, 예천군수입증지 80,000원을 추징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위반(증빙서류 미첨부)

-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및 같은 규칙 제67조(개산급의 정산)에 의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면사무소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
- ▶ 증빙서류 미첨부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4. 유류수불대장 관리 부적정

-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제21조(일시보관)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물품 출납에 있어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3.12.31.복지회관 연료를 구입하고 2014년 1,112L를 유류수불대장 없이 불출하였으며, 인사이동시 5일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인계하지 않음
- ▶ 미 작성된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유류불출 현황을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